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I)

2021. 8. 18(수) ~ 19(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한 의견 수렴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한 의견 수렴

□ 일시 및 장소: '21.8.18(수) ~ 19(목), 14:00 ~ 16:00, 11동 대회의실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21.8.18(수), ▲(직업성질병 등 기타사항) '21.8.19(목)

□ 운영방식

- 집중 검토를 위해 논의 주제를 핵심 이슈(① 직업성 질병 ②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에 집중하여 토론회 방식(전문가 발제 후 토론)으로 운영

□ 진행(안)

일시	내용	비고
8.18(수)	14:00	인사말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
	14:03	참석자 인사 사회 : 강성규 교수(가천의대)
	14:07	발제 권혁 교수(부산대)
	14:40	토론 이시원 변호사(울촌) 김규석 국장(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임우택 본부장(경총) 양옥석 실장(중기중앙회)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15:45	마무리 및 인사 사회자
8.19(목)	14:00	인사말 및 참석자 인사 사회 : 강성규 교수(가천의대)
	14:05	발제 이상길 실장(산업안전보건연구원)
	14:35	토론 김인아 교수(한양대의대) 김규석 국장(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임우택 본부장(경총) 양옥석 실장(중기중앙회)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15:45	마무리 및 인사 사회자

목 차

발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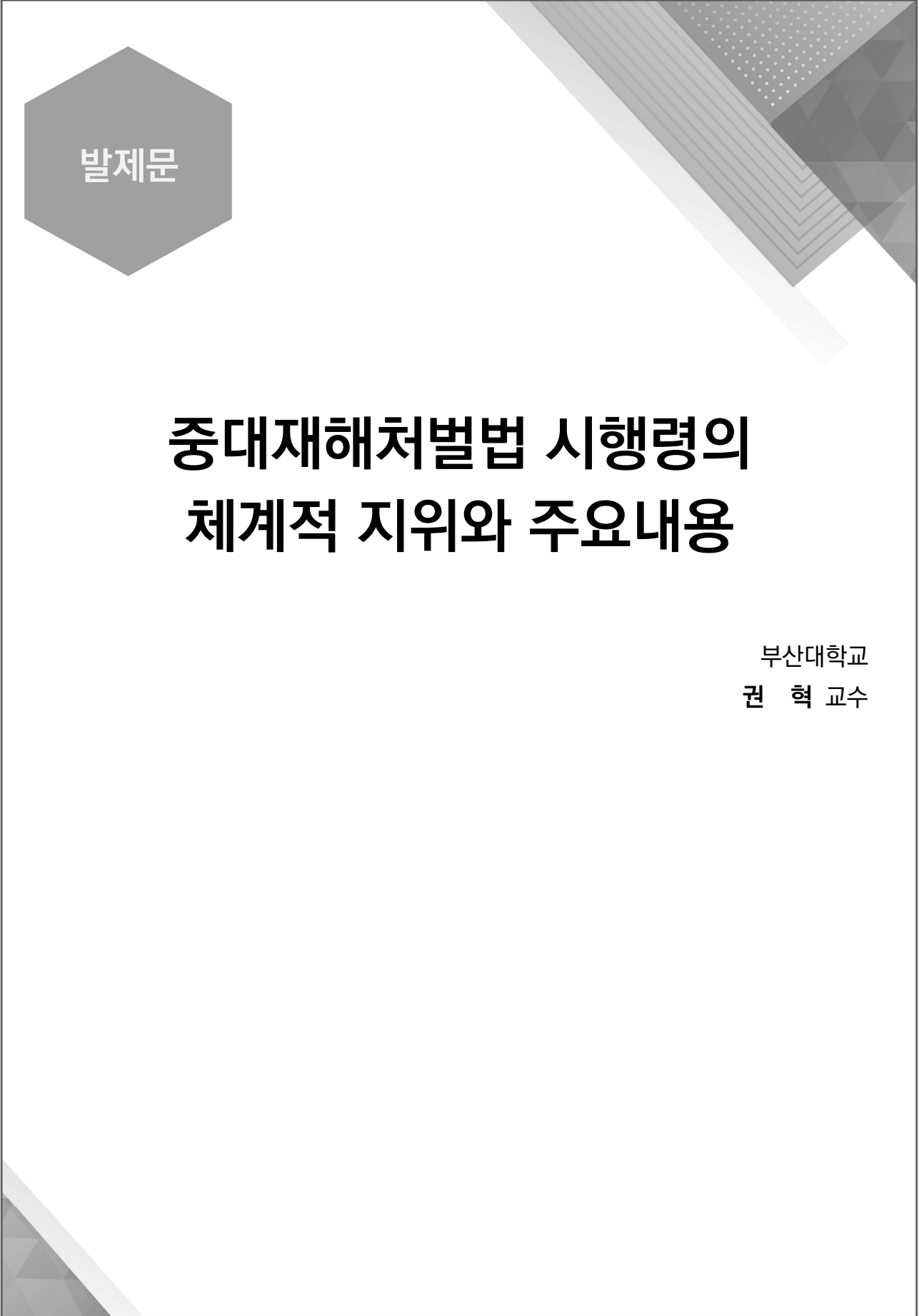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체계적 지위와 주요내용 1
부산대학교 권 혁 교수

토론문

- 법무법인(유) 율촌 이시원 변호사 17
-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본부장 25
-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실장 35
-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 41
- 민주노총 최명선 실장 63

별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85



발제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체계적 지위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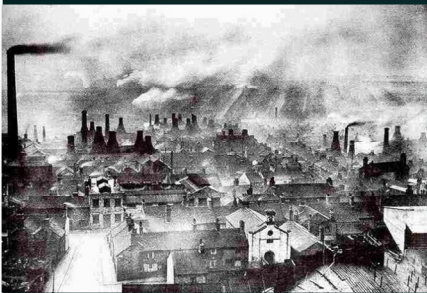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권 혁 교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체계적 지워와 주요 내용

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산업재해와 노동법체계의 등장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법 대응체계



예방 – 보상 – 재활 : 3단계 구조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등

<보상>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활> : 장애인 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직업훈련) 등

→ 산업재해에 대한 공적 부담화 = 사회적 비용 부담 확대(약18조) → “예방”!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속성

<제정> : 1982년 7월 1일

<개정> : 부분 개정 포함 총 41회

(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준 준수 위반 = 형벌(최대 2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체제의 한계



산업안전보건법의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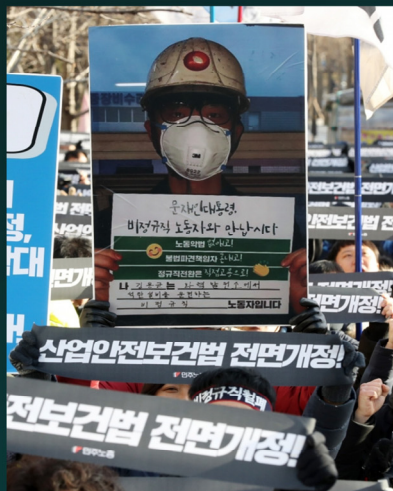
1. 사전예방규범 → 사후 제재규범화
2. 산업안전기준법 → 안전공학기술규범화
3. 산업재해예방규범체계 → 사고 대응 규범화

산업재해예방 방법론 재검토!

(Wie) 100 → 90.....(Wie?) 10 → 0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사업장 내부 노동규범성 → 위험 단위 규율체계화”



“위험의 외주화 ?”

1. 위험의 전가
2. 위험의 방치
3. 위험의 고도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과 보호범위

<구> 산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 산안법 제1조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의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왜 없나?”

“Keine Strafe Ohne Schuld!”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1. 규율 영역 : 사회재난법 + 산업안전법
2. 규율 구조 : 총칙+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보칙 =16개 조항
3. 배경 : 가습기살균제 + 세월호 + 이천화재
4. 규율 목적 : 처벌 > 예방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제 원리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Robens 보고서: “각자 자기 역할을!”

1. 안전보건담당자/책임자/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규칙

2. 경영책임자?

➔ (구) 산안법 상 의무 이행을 위한 안전전문가에게 맡겨라!

➔ (현) “관심 + 토대조성” ➔ 안전경영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의 특별법이 아님!

중대재해처벌법 기능적 의미



중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중대 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예방 < 처벌

➔ 안전확보의무 위반 자체 처벌 X = 중대재해발생 시 처벌 O

#Vgl: 산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방 > 처벌

예방의무 위반 처벌 / 단, **결과 발생 시 가중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요구



➔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1)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 (2)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에 대한 책임** ? No

=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시 안전보건확보의무 미흡/불이행** ! Yes

예) 추락방지시설 확인? 비계설치점검? **No!**

예) 예산/조직/인력인사/시설 = 안전‘체계’ 구축! **Yes!**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요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안전 및 보건 조치 ”

“중대산업재해 발생! ”

→ 중대법 제1조: 의무위반 → 중대재해발생 : 인과관계 입증

* 예) 1호선 - 4호선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개념



법 제2조 (정의)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Vgl: 노조법 제2조 2호 :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개념



경영책임자 개념 = 안전 확보 의무의 주체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제1항 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경영 영역 = 예산/인력/조직/설비

➔경영책임자 : 예산/인력/조직/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 개념



* 중대산업재해 : 중대산업재해란,

(1)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2) <중대한> 산업재해일 것

- ➔ 사망(1명 이상)
-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병이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비교: 산안법 상 중대재해 (제2조 제2호/시행규칙 3조))

(1)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2) 중대한 산업 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내용의 규모/사업별 특성



의무부과사업장의 특성 규모 고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 규모 등의 고려 = 500인 이상 OR 건설업: 안전보건전담조직

→ 향후 해당 업종 차원에서의 보완요구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확보의무의 구체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시행령상 '구체성' 논쟁

→ 모법에서 해답 찾기!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구체성의 한계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X**

→(사회과학+안전기술) 협업에서 '대책' 찾기!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확보의무의 내용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목표: 체계(system) 구축 + 이행조치

〈시행령〉 안전경영체계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매년 안전보건관련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위한 '직정' 예산 편성 (체계)+ 집행(체계) + 관리 체계 둘 것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확보의무의 내용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목표: 체계(system) 구축 + 이행조치

〈시행령〉 인적 안전 체계

○ 안전/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을 법정 인원 '이상' 배치하도록 할 것

○ 상시 500인 이상(건설 시공 상위 200위 이내) =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둘 것 = 관리조직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확보의무의 내용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목표: 체계(system) 구축 + 이행조치

〈시행령〉 위험성 점검 안전 체계

○ 점검: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점검 + 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 이행상황 점검 = 시스템 (산안법 상 위험성평가 방식 준용)

○ 소통: (연2회, 반기1회)주기적인 종사자 의견 청취 + 재해예방 필요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되도록 조치(단 산안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통한 논의 및 의결로 갈음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확보의무의 내용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목표: 체계(system) 구축 + 이행조치

〈시행령〉 긴급 - 도급 안전 체계

○ 긴급안전체계: 중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등 대응절차 매뉴얼 마련 및 실제 현장 운영 여부 확인/점검(반기1회 이상)

○ 도급안전체계: 도급 시 수급인의 재해예방 역량 + 안전보건비용적정 지출 및 투자 여부를 고려 하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이행확인 점검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확보의무의 내용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4호. 안전보건의무이행관리조치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목표: 법령 상 의무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영책임자의 관리 조치 내용 마련

→ 영역: 산업안전보건법/광산안전법 등

→ 방법: 안전보건법령 상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및 개선조치

〈시행령〉 안전법령준수 점검체계

○ 반기별 1회 이상 법령상 의무이행 점검 결과 확인할 것! → 점검은 위탁 가능!

○ 점검 결과 확인 후 인력 배치 및 추가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예산 확보 필요 조치 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범위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행령〉 20시간 안전보건교육수강 의무 그 외 교육 내용, 방식, 미이행시 과태료 규정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공표방법/기준/절차 구체화



감사합니다.

토론문

경영책임자등 의무 규정의 해석 적용과 관련된 문제 제기

법무법인(유) 율촌
이 시 원 변호사

경영책임자등 의무 규정의 해석 적용과 관련된 문제 제기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이시원¹⁾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기업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종사자의 안전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안전보건증진 수단으로서 형사처벌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이론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2004. 공직선거법의 대대적 개정 당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 모든 후보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법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결국 강력한 제재를 담보로 한 공직선거법 시행이 우리 선거문화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기부행위 금지에 위반하여 수수한 금품의 50배를 과태료로 징구하게 되자,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선거구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주민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비록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중국에는 우리 산업계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률이 수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탄생한 만큼 우리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할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법률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시행 초기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고 예상되므로, 토론문에서는 시행 초기 어떠한 혼란과 손실의 발생이 가능한 것인지 실제 법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1) 이하의 내용은 토론자 개인의 견해이며, 소속 법무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1. 경영책임자를 특정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시행령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즉, 법률과 시행령이 정하는 의무의 이행 주체는 법률 상 경영책임자인데, 경영책임자의 특징은 법률의 추상적인 정의규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당초 법안에는, “대표이사 및 이사”로 법인 기업 내 직책자를 특정하여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은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평가와 해석’이 필요한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자연인인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기업은 법률의 정의 규정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과연 기업 구성원 중 누가 그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경영책임자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조직 형태와 내부 업무 분장은 극히 다양하고, 기업이 대규모화할수록 부문 또는 사업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운영하거나, 사업조직과 지원 전략조직을 구분하여 각각의 대표이사를 두어 책임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생각하여 의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할지 결정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장 최고위에 있는 사람이 경영책임자’라는 명제가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결론이겠으나, 이는 입법 당시 지적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론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기업의 조직 및 운영 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위임원 간 지위의 우열이 불분명한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고,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우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자에 준하는 것인지 기준도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경영책임자인지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을 하는 상황이 초래되기 전까지는 불확정적이고 불안한 상태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기업이 사업부문장을 경영책임자로 파악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경우,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현장 안전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수사 결과 수사기관이 사업부문장이 아닌 다른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하게 되면, 아무리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충실히 이행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책

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후적으로 식별된 경영책임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만약 그가 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법률상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법원의 판단이 어떠한 방향에서 나오게 될지는 예상하기 힘들고,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가질 수 있는 구체성 역시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가이드라인이 노사정 간 합의에 준하는 동의를 얻음으로써 사실상의 규범력을 얻는 방법이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충실한 수행’과 ‘적정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으므로 별도로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은 향후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원하는 측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개시를 촉구하기에 최적의 요건이며, 그와 동시에 경영책임자를 방어하고자 하는 측에서도 최선의 방어 기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적정성을 예로 들어 살펴 보겠습니다.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사정에, 의무 준수 여부는 결국 중대재해 발생 후 사후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함께 감안하면, 적정성 여부는 실제로는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보다는 편성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규모를 충실히 검토하였다고 변명하고, 그 검토 절차와 산출 근거에 비추어 경영책임자로서 이를 적정하다고 믿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혐의가 있거나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설에 따르면, 시행령(안) 제4조 제4호의 의무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의무와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의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의 구축이라는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그리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면, 차라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이라는 구절이 ‘체계’를 함께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의무이행 여부의 기준은 예산의 적정성이 아니라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체계를 수립하였는지 여부가 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는 시행령(안) 제4조

의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뒤에 심표가 없이 바로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구절로 연결되고 있는 점에서 오히려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이행의 점검과 불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는 안전관계법령 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시행령(안)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이를 받아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의무 그리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체계 구축’,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안전관계법령의 구체적인 조치의무와 혼동, 혼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보건 관련 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인 조치의무의 이행이 되어버리는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서는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경영책임자에게는 관리상의 조치를 부여하는 것이 현장에서의 구체적 조치의무 이행을 조장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그러한 노력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안)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해석에 따라서는 그러한 구분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불이행 사항이 확인되어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되는 경우를 상정하겠습니다.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이행은 사업주인 법인의 의무이므로, 불이행 사실을 인지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당연히 조치의무의 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대법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자 판단 요건 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작업에 투입된다는 사정을 아는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행위자 적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장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집행도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가 수행할 다양한 업무 간 균형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불가능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해석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모법의 이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불이행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경우, 예산 및 인력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는 예외로 하되, 그 외의 단순 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대표이사의 이행지시가 있으면 그 조치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당초,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당연히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인 항공안전법, 선원법, 광산안전법으로 한정되지 않을까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한다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었습니다.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명제는 옳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법을 지키는 문제와 경영책임자에게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발생한(이 규정이 영향을 미치는 시행령(안) 제5조 제2항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쉽게 인정될 것입니다. 불이행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해당 안전조치 불이행을 시정할 기회를 얻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지켜야 할 전기, 화학, 소방 등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며, 일부 사망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처벌을 정하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보다는 낮은 수준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그 범위를 중대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제4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치의 수행방식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에 위임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게 고식적인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위 위임규정은

조치내용과 수행방식 모두를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조치내용은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에 연동될 수 밖에 없는 점에서 시행령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제한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의 방식

법률 제4조와 제5조, 종사자의 정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급, 용역, 위탁을 준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거나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다면, 자신의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을 받은 제3자의 근로자에 대해 완전히 동일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경영책임자는 시행령이 정하는 각종 확인, 점검, 체계마련 등 모든 의무를 자신의 근로자는 물론 도급, 용역, 위탁받은 제3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안전보건 관계법령이므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도 이행 점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당해 종사자가 소속된 사업주의 경영책임자는 물론 도급 등을 준 사업주의 경영책임자가 중첩적인 의무이행의 주체가 됩니다.

다층적인 하도급 구조 하에서 이러한 방식의 의무이행이 가능할 것인지 현실적인 의문이 있고, 도급, 용역, 위탁을 준 사업주에게 이와 같은 직접적인 관여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계약관계의 해석 및 재산권 등 측면에서 법리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급, 용역, 위탁을 받은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확인, 점검, 체계 수립 결과를 도급, 용역, 위탁을 준 사업주가 통보를 받는 수준의 이행의무를 정하거나, 시행령 상 일부 의무에 대해서는 도급, 용역, 위탁을 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며, 강력한 처벌로 입법목적의 달성을 추구하는 법률만큼 제정 과정에서 체계 정합성과 규정의 명확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여야 했다는 아쉬움은 모두가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법률 시행이 5개월 가량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므로, 모두가 지혜를 모아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이 우리 산업안전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토론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토론문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

한국경영자총협회
임 우 택 본부장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토론회 토론문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

한국경영자총협회(2021.8.18)

1 서론

-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 없이 제정되다 보니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 등 많은 내용들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들이 많음
 - 특히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이 처벌과 직결되는 만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이나, 경영계의 기대와 달리 조문 곳곳에서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정부가 위임근거 부재와 역할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별표에 관련내용을 명확히 규정
 - 정부가 위임입법 한계라는 틀 속에서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
- 이대로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기업들은 무엇을 지켜야 처벌을 면하는지 알 수 없고, 정부도 법 집행에 있어 많은 혼란을 겪을 것임
-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률제정의 취지를 달성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해야 함
- 중대산업재해의 경영책임자 의무내용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의견은 아래와 같음

2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안 제4조)

[시행령(안)]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생략)
3.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 나. 가목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5.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1회 이상 청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이 경우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7. (생략)
8.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 가.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내용이 불명확하여 어느 수준(범위)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 수 없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형사처벌 발생이 우려됨

□ 제3호의 ‘충실하게’, 제4호 및 제8호의 ‘적정한’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표현으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적절치 않음

○ 안전관계법령 등 우리나라의 법률 중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충실하게’라는 문언을 둔 법률을 찾기 어려움

□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수사권 남용이 우려됨

○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시행령(안)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과 기준이 상당해 법집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됨

○ 실제 최근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항목으로 감독하였는데 인력 및 예산 등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의 수준으로 점검하여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음

**둘째, 전문인력 배치규정은 현행 법률들과 상충되고, 현행 산안법령과 유사한 의무에 대한
갈음규정이 부족함**

□ 제3호의 전문인력 배치는 현행 산안법 및 기특법과 상충됨에도 기존 법률에 대한 준용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현행 기특법*은 산안법상의 산업보건의 선임규정을 면제하고 있으나, 가목은 산안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제4호, 제8호의 의무내용은 산안법상 제14조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64조의 적격업체 선정 의무와 유사하나, 갈음규정이 없음

○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따른 집행”은 대표이사가 예산을 이사회 보고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 여부를 외부 위원들이 검토하여 승인할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과 절차도 현행 도급인의 적격업체 선정의무와 고용부 매뉴얼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맡겼다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셋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실행의 적정 여부를 사고발생 이후에 판단하는 것은 실효적인 중대재해 예방이 아님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의 적정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평가·인증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함
-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정한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정부가 사전에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이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임

넷째, 현행 산안법상 동일·유사한 내용을 경영책임자 의무로 규정하면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등 형벌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짐

- 경영책임자 의무로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내용은 산안법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위반의 정도가 다르지 않음
- 산안법상 처벌이 없거나, 과태료 수준의 위법행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 부과는 매우 과도하며, 가중처벌의 규범적 근거로 매우 미약함
- 제2호(위험성평가 실시) 및 제8호(도급, 위탁, 용역 시 평가기준 및 절차마련)는 산안법상 벌칙이 없고, 제3호(전문인력 배치 및 직무수행)는 벌칙이 과태료임

〈경영계 입장〉

- 형사처벌 구성요건으로 부적절한 표현인 ‘충실하게’, ‘적정한’ 문구 삭제
- 산안법 및 기특법상의 전문인력 규정이 준용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추가
- 제4호, 제8호 의무에 대해서도 산안법상 같음규정 마련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적정 여부를 정부가 사전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관리상조치(안 제5조)

[시행령(안)]

제5조(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호의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첫째,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 내용이 불명확하여, 시행령만으로는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법령의 범위와 구체적 의무내용을 알 수 없고, 감독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우려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령(안)에 전혀 규정하지 않아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범위를 예측할 수 없음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사실상 동어반복으로 상기 문언만으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음

○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광범위하므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언급함(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 감독기관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자의적인 법 집행이 예상됨

○ 정부는 위임근거가 없어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형사처벌을 하는 법률의 적용을 정부가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

둘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산안법으로 특정되지 않을 경우 점검 위탁과 법 집행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임

- 제2항제1호의 단서인 점검위탁은 고용부가 지정한 전문기관만 할 수 있는데, 산안법 이외 법령에 대한 점검까지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함
- 모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 점검을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할 수 없음

〈경영계 입장〉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산안법으로 특정해야 함

4 시행일(부칙)

[시행령(안)]

(부칙) 이 영은 2022.1.27.일부터 시행한다.

첫째, 정기적 의무내용까지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정기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의 경우는 법 시행일 이후라도 해당 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반기 1회 이상으로 규정한 종사자 의견청취, 중대재해발생 보고 등 절차 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점검 결과보고의 경우는 법 시행 후 6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님

둘째, 법 시행일에 맞춰 경영책임자 의무준수를 적용하고,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임

- 법 시행일은 '22.1.27일이며, 경영책임자 의무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데, 의무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은 채, 법 시행일 즉시 의무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경영계 입장〉

- 경영책임자 의무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 시행 이후 최소 6개월까지는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규정을 부칙에 마련해야 함
 -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사업장은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

5 중대산업재해 수사권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건에 대해 고용부와 경찰의 중복·과잉 수사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 시행 전에 수사권 조정이 필요함
 -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어 고용부가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담당하더라도,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복수사가 불가피

〈끝.〉

토론문

사업주 의무 등

중소기업중앙회
양 옥 석 실장

사업주 의무 등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실장

① 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구체화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벌임에도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많음
 - 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물론이고 법상 모호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시행령에서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안에는 그런 구체화 작업이 부족함
 - 특히 경영책임자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필요
- 사법부의 해석에 맡겨야 한다고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은 소송으로 대응할 여력이 매우 부족
 - 99%의 대표가 오너인 중소기업은 사고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유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영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 발생
- 안전부분에 대한 총괄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법상 최종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화 필요

② 사업주 의무사항의 구체화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이 이 법을 준수하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하면 법을 준수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
 - 형사벌인 만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그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함
- ‘적정한 예산, 충실하게 수행’ 등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
 - 예산은 산안법과 중대법상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한정하고, 건설업은 발주자가 지급하는 산업안전관리비로 규정하는 등 구체화 필요
- 지금도 현장에서는 감독관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하소연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

- 전문분야 컨설팅이라 비용이 만만치 않고, 막상 컨설팅을 받으려 해도 기준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 호소
- 사업주의 의무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

③ 형사벌인 만큼 의무를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함

1)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한정

- 이번 시행령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무한대로 넓혀 놓음(제5조)
- 관련법을 준수해야하는 것이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이겠지만, 형사 처벌을 규정한 이 법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
- 사실상 고용부가 감독하는 과정에서도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하기 어렵고, 산안법상으로도 1,200개가 넘는 의무를 부담하면서 그 외 모든 법률을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대기업도 불가능
- 이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점검을 위탁가능하게 하였으나 이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전문 기관을 찾기도 어렵고, 고용부가 지정한 안전관리 업체는 192개에 불과함 * 50인 이상 기업은 51,678개사(전국사업체조사 기준)

2) 전담조직 구성 의무 대상 합리화

-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건설업은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로 규정하여, 전문건설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은 매출이 종합건설사의 10분의 1수준인데도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함
- * 500명 이상 종사자 산업별 평균매출액 현황 (통계청 KOSIS)
 - 제조업(2조1천억원), 종합건설업(1조4천억원), 전문건설업(1천1백억원)
- 건설업의 경우 **일용근로자를 수시로 고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하루 차이도 이 규정을 적용 받는지 안 받는지가 달라질 수 있음
- 아마 이러한 이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전담인력 보유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추정됨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규정도 건설업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규정하며, 도급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수급인은 선임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4 사업주가 안전의무를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어야 함

-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산재예방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의무 준수시 처벌이 면책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필요
 - 지금도 현장은 매우 큰 불안감과 혼란으로 반기업정서에 따른 법 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음
- 면책규정이 별도 없어도 원칙적으로 법령상 의무를 다하면 책임을 면한다고 하나,
 - 사실상 산재사고는 인과관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 점과 현행법령상의 의무 수준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의무준수 여부가 재량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면책규정 별도 신설이 반드시 필요

5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관리 위탁시 비용 지원 필요

- 자체적인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점검받고 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준 점에서는 매우 다행
- 하지만 올해는 세계적인 팬데믹인 코로나로 영세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과 고용상황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
- 안전부분에 대한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용지원이 필요
- 현재 정부 지원사업이 대부분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이 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은 막막한 상황
 - 50인 이상 기업에도 적극적인 지원 필요

6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 안내 및 현장 지도 필요

- 시행령에 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가이드가 조속히 보급될 필요

- 아울러 민간 컨설팅에 의존하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정부(공단)의 책임감 있는 현장 지도

7 시행까지 일정이 촉박한 만큼,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준비기간 부여 필요

- 시행령이 순차적으로 제정된다 하더라도 내년 1월 시행까지는 3개월 남짓 남게 되어, 중소기업의 준비가 사실상 어려움
-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지만 192개의 민간업체가 5만개를 넘는 사업장을 소화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촉박
- 기존 시행령안에 특례기간이 포함되어 준비 기간을 좀 더 인정해 줄 수 있었으나, 이를 좀 더 확대해 적용해야 함
- 기업 처벌이 목적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이 목적인 만큼 기업들이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토론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中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한국노총
김 광 일 본부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中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1.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 나. 가목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5.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받기 1회 이상 청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이 경우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7. 사업 또는 각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받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할 것
8.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 가.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절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경우 모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라고 되었으나 시행령에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의 문구를 삭제하여 정부가 자의적으로 모법의 의미를 축소하였음. 이러한 축소 및 한정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에서 전반적으로 존재하며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법을 형해화하고 무력화 하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음.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모법 / 시행령 中 시행령 위임사항 정부의 자의적 축소

중대재해처벌법 모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u>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u> 2. 생략 3. 생략 4. 생략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u>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u>”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시행령 위임사항에서 삭제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에는 **위험작업 시의 2인 1조 작업 및 과로방지를 위한 적정 인력 배치** 등에 드는 인력 및 예산 선정이 들어갈 필요가 있음
- 제4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살펴보면 누가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임, 모법 제4조를 살펴보면 분명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의무를 수급인이 지켜야 할 것처럼 보이면서도 제8호만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를 따로 명시하여 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하수급인) 중 서로 어떤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1.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제4조제1호의 목표, 경영책임 설정만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며 **이행, 평가 그리고 개선까지의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

2.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제2호의 위험성평가 갈음의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공단의 KRAS(인터넷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 여부 판단 문제와 부실한 위험성평가를 할 경우 판단 및 인정 여부 문제가 있음.**
- **위험성평가의 실시만으로 갈음할 것이 아닌 결과를 통한 개선 이행 및 평가 등도 함께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3.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 나. 가목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

- 제4조제3호가목의 “산안법 제17조부터 제19조 및 제22조 등의 경우” 산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하는 것인데 **제22조(산업보건의)의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기특법)에 의한 제28조(기업의 자율고용)와의 **관계 문제**가 있음.

〈참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고용·임명·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5. 1. 28., 2016. 1. 6., 2019. 1. 15.>

1.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 제4조제3호가목의 따라서 전문인력을 배치하였다는 것은 산안법상의 안전·보건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인데, 만일 안전·보건 위탁 시에도 전문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의문이며 위탁으로도 해당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볼 수 있을지의 의문이 있음.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 제4조제4호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에서 단순히 내용만 보면 예산편성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한 예산편성에 국한하여 버림, 따라서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비용,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노무제공자 건강유지비용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5.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제5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료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제4조제5호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경우 안전1, 보건1인으로서 상기 단서조항 미만 규모일수록 산안법 시행령 18조, 22조(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규정된 상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각 별개 조직의 구성원에서 독립시켜 통합된 안전보건조직으로서의 여건을 확보할 필요성이 증가함(현실은 각각의 소속 부서에서 정의한 업무만 이루어짐)

6.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받기 1회 이상 청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이 경우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제6호 “위원회 또는 협의체”의 경우 산안법상의 구성으로 볼 필요

- 수급인 외의 관계수급인(하수급인)의 참여를 제외하고 있어 수급인의 종사자(특고 포함)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어 이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현실은 관계(하)수급인에게서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큼
- 협의체 논의 시 도(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데 있어 현실 여건 상 도(수)급인 대리인의 참여에 의한 운영이 일상적으로 되고 있어 이의 해소할 필요가 있음

7. 사업 또는 각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받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할 것

○ “급박한 위험”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을 보더라도 개인의 주관에 맡기는 경향이 크다고 봄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산안68320-249,2001.06.13.)

(질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및 중대재해 발생의 정확한 용어 정의는?

(회시)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의 조건과 상황이 일정하지 않고, 또한 수시로 변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판단 기준은 각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급박한 위험”은 유해 물질의 누출, 질식 또는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압력용기의 압력 급상승으로 파열·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안전과 보건에 즉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믿는 것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 등에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급박한 위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 때 “중대재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보아야 함. (산안 68320-249, 2001.06.13.)

- 제4조제7호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의 경우 산안법에서도 아직 작업중지(특히 노동자의 작업중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작업중지 등의 절차 수립 시 ‘작업중지의 기준’을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8.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가.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 제4조제8호나목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의 경우 수행기간이 종사자의 1일 생산성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 **안전 및 보건 관리비용에도 작업지휘자, 유도자, 2인 1조 작업 등 인력의 배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비용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2. 제5조(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조(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호의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의 경우 산안법에 의한 ‘선임위탁’과 구분하여 **준수평가 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선임위탁과의 독립’은 위탁기관과의 구분이 아니라 ‘선임위탁계약’과의 구분으로서 ‘위탁’한 기관은 ‘준수평가 위탁’을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 준수평가 전문기관은 **해당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여야 함
- 제5조제1호의 경우 정부의 취지와 달리 규모와 상관없이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이 난립할 것이며 점점 부실로 인한 책임소재 문제가 있으며 위탁 자체가 법인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전가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탁여부와 관계없이 법인과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및 처벌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음

3. 제4조·제5조(공통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공통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공공기관의 정당한 인력 및 예산 요청에도 기획재정부 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하거나 축소하여서 한 경우에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는 인력 및 예산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에 기관의 장이 처벌받아야 함
- 제5조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외 되었던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및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근로기준법 내의 과로에 대한 내용 및 직장 내 괴롭힘 내용, 휴식·휴게시간 등 **포괄적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설정할 필요**
- 다만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포괄적으로 설정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담당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 담당하여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각 관계 법령에 관련된 정부부처와 협약을 맺어서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의 경우 해당 부처 및 기관이 조사 후 경찰이나 검찰이 취합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봄
- 시행령 제4조·제5조의 경우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와 방침을 정하고, 안전보건의 전담조직을 갖추라는 것을 제외하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 정도 규정으로서 규모가 있는 법인들은 이미 충족된 사항으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보다 강화함과 동시에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의 의무를 법인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지도하는 측면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 붙임 자료(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비교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2 안전보건목표 (1) 조직은 작업부서별(또는 작업단위, 계층별)로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안전보건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안전보건목표를 수립 시 위험성평가 결과, 법규 등 검토사항과 안전보건활동상의 필수적 사항(교육, 훈련, 성과측정, 내부심사) 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직은 안전보건목표 수립 시 안전보건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체적인 것 ② 성과측정이 가능할 것 ③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통해 달성이 가능할 것 ④ 안전보건과 관련이 있을 것 ⑤ 모니터링 되어야 할 것 (4) 조직은 안전보건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적·물적 지원 범위를 반영하여야 한다. 5.2 안전보건방침 (1) 최고경영자는 조직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
1.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증대해제치별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
		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방침은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조성하려는 의지가 표현될 것 ②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행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포함할 것 ③ 조직의 규모와 여건에 적합할 것 ④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의지를 포함할 것 ⑤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에 대한 의지를 포함할 것 (3)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방침을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4)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같을 수 있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를인지할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	8.1 운영계획 및 관리 (1) 조직은 안전보건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계·기구·설비, 사용물질, 작업 등에 대해서 안전보건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직은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① 운영절차가 필요한 안전보건활동

증대제해치별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
	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작업장의 안전조치 나. 중량물·운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다.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라.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마. 떨어짐·무너짐에 대한 방지조치 바. 안전검사 실시 사.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 예방활동 아. 전기재해 예방활동 자.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활동 차.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활동 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지원 타 안전보건관계자 역할과 활동 파. 산업재해조사 활동 하.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 ② 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유해·위험예방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험성평가 ③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3) 조직은 안전보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된 임시 및 영구적인 변경 실행 및 관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① 다음을 포함하는 신규제품, 기존제품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및 절차 - 작업장 위치와 주변 환경 - 작업 조직 - 작업 조건

증대제해치별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
		- 장비 - 인력 수급 ②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변경 ③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위험성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의 변경 ④ 지식과 기술의 발전 (4) 조직은 의도하지 않은 변경의 영향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에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1.1 위험성평가 (1) 조직은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작업방법, 보수·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 등 산업기계, 유해위험물질 및 유해위험공정 등 근로자의 노동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재해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에 대한 안전보건 위험성평가와 그 밖의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파악을 통한 조직의 내·외부 현안사항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과 기회를 결정하고 평가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사업장의 특성·규모·공정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위험성평가 대상에는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증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
		① 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 위험시설 ② 조직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위험 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4) 위험성평가 시 조직은 안전보건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능한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① 교대작업,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일시고용, 고령자, 외국인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③ 교통사고, 체육활동 등 행사 중 재해 (5) 조직은 위험성평가를 사후적이 아닌 사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 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6) 조직은 위험성평가 조치계획 수립 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한다. ①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② 유해위험요인의 대체 ③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 대책 ④ 안전보건표지, 유해위험에 대한 경고, 작업절차서 정비 등 관리적 대책 ⑤ 개인 보호구의 사용

증대해제특별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
		(7)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3.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 관리감독자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1) 최고경영자는 공표한 안전보건방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이 기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실행 및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계층별, 부서별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문서화하여 공유 되도록 하여야 한다. 7.1 자원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자원(물적, 인적)을 결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7.2 역량 및 적격성 조직은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적합한 능력을 보유하도록 해야 하며 업무수행상의 자격이 필요한 경우 해당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2조 산업보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
나. 가목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	안전·보건관리자는 전담업무에 관련된 사항이 신설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3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1) 조직은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① 조직의 전체 목표 및 부서별 세부목표와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책임자 지정 ② 목표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수단·방법·일정·예산·인원) ③ 안전보건활동별 성과지표 (2) 조직은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의사소통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 또는 추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정하여야 한다.
5.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500인 이상 또는 상위200위 이상은 이미 대부분 전담 조직 있음. 전문인력의 합이 3인미만의 경우 제외는 사실상 무의미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1) 최고경영자는 공표한 안전보건방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이 기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실행 및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계층별, 부서별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문서화하여 공유

증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1 자원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자원(물적, 인적)을 결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7.2 역량 및 적격성 조직은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적합한 능력을 보유하도록 해야 하며 업무수행상의 자격이 필요한 경우 해당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받기 1회 이상 청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이 경우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5.4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조직은 다음사항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안전보건 경영성과 (2) 해당년도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이행현황 (3) 위험성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4) 정기적 성과측정 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5) 내부심사 결과 7.4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1)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내·외부 의사소통을 위해 의사소통의 내용, 대상, 시기, 방법을 포함하는 절차를 수립, 및 실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의사소통 시 성별, 언어, 문화, 장애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조직은 안전보건 문제와 활동에 대한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결핵, 개선 아이디어, 관심사항) 내용을 검토하고 회신하여야 한다.
7. 사업 또는 각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조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받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할 것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8.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1) 조직은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산업사고 또는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조직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사태 대응 훈련 후에는 성과를 평가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3) 조직은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내용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장비 보유현황 ②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③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④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⑤ 비상시 대피절차와 재해자에 대한 구조, 응급조치 절차 (4) 조직은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내용에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및 홍보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5) 조직은 비상시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교육·훈련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
		안전보건상의 영향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필요시 이해관계자도 참여시킬 수 있다.
8.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8.1 운영계획 및 관리 (5) 조직은 다음사항이 포함된 조달 또는 임대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과 관련된 조달 또는 임대물품의 안전보건상의 요구사항 ② 조달 및 임대 물품에 대한 입고 전 안전성 확인 ③ 공급자와 계약자간의 사용설명서 등의 안전보건 정보 공유 사항
가.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절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제5조(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증대해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
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을 것.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점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호의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1) 성과측정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효과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사항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방침에 따른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고 있는가를 측정 ② 안전보건방침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안전보건활동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여부 확인 ③ 안전보건경영에 필요한 절차서와 안전보건활동 일치성여부의 확인 ④ 적용범위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여부 평가 ⑤ 사고, 아차사고, 업무상재해 발생 시 발생원인과 안전보건활동 성과의 관계 ⑥ 위험성평가에 따른 활동 (2) 성과측정 또는 모니터링 시, 조직은 현장에 작업환경 등 측정장비가 필요한 경우 측정장비는 항상 측정이 가능하도록 점검·교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10.2 사건, 부적합 및 시정조치 (1) 조직은 모니터링, 측정, 분석, 성과평가 결과 및 내부심사 결과 등에 의해서 사건 또는 부적합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시정조치 시 사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취해진 조치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증대제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
		(3) 조직은 시정조치에 따른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7.3 인식 (1) 근로자는 자신과 관련된 안전보건사항을 인식하여야 한다. (2) 조직은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시에는 조직의 계층, 조직의 유해위험요인, 근로자의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내용에 대한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② 근로자의 업무 또는 작업이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 ③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내용 및 잔여 위험요인과 그 대책 ④ 비상시 대응절차 및 규정된 대응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3) 조직은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 시 그 필요성을 파악하고 교육훈련 후에는 교육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토론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토론문

-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

민주노총
최 명 선 실장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1.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시행령의 기본전제

○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하청 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단계 도급이 행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이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포괄하지 못하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도 감안하여 시행령 제정 필요

○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개별 사업장과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함

○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에는 법 제4조의 조치가 적용 된다

-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는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하청 고용뿐 아니라, 특수고용의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도 의무 부여되는 것임.

2. 시행령 4조 :

중대 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시행령 4조 (안) 의견 요약

입법예고안	의견 및 개정요구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의견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등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령 4조가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해야 함. ○ 개정요구(안)

입법예고안	의견 및 개정요구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략----다음 각 호를 말하며, 법 5조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도 이와 같다. ② 1호부터 8호까지 각 호마다 <종사자 명기>
2.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 중략... (위험성 평가의 실시로 같음..)	○ 의견: 위험성 평가의 실시가 확대될 수 있는 긍정성이 있으나, 법령의 노동자 참여와 개선사항 이행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형식적 운영을 하고도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된 것으로 될 수 있음 ○ 개정요구(안) - 중략: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혹은 노사협약에 따라 종사자 및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 및 개선방안 이행으로 같음할 수 있다.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 의견 : 법에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으로 명기되었으나, 시행령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으로 협소하게 규정됨. 2인1조 작업, 과로사 예방 등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 등 핵심대책이 제외됨. - 체계를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행의 직접적 의무 부여 필요함. ○ 개정요구(안) ① 2인1조 근무 작업과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작업, 과로사 방지 및 안전작업을 위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할 것. ② 매년 종사자의 재해예방 및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할 것
5. 500인 이상 기업, 200위 건설회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각 사업장의 전문 인력 합이 3명 미만인 경우 제외	○ 의견: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의 범위가 협소 ○ 개정 요구(안) - 300인 이상 기업(비영리 법인, 공공기관 포괄), 1,000 위 건설회사 등으로 확대
6. 종사자 의견 청취중략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같음할 수	○ 의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건설업 안전보건협의체 등의 형식적 운영으로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으로 같음될 수 있음.

입법예고안	의견 및 개정요구
있다.	○ 개정요구(안) - 의견청취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혹은 노사협약에 따라 근로자 위원들의 활동시간을 보장하는 산안법 24조, 64조, 75조에 따르는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 의결 및 개선방안 이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절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 의견 - 〈안전 및 보건관리 비용〉으로 한정하면 보호구 지급 등으로만 해석됨. 하도급의 인력 등 적절한 비용지급과 수행기간 등 중대재해 핵심 대책이 제외 됨 -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간접적 의무이며 직접이행의 의무로 부여해야 함. ○ 개정요구(안) - 8호 : --중략--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할 것. -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보장해야 하는 인력 등 적절한 비용과 수행기간

2) 시행령 4조가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책임자 의무임을 명시적 규정

○ 시행령 문제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5조 (도급, 용역, 위탁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서 “도급, 용역, 위탁등을 행한 경우에 법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시행령 4조(안)은 전체 8호 중에서 6호에만 종사자가 명시되어 있고, 8호를 통해 도급용역 및 위탁관련 조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 4조로는 6호와 8호만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적용사항으로 규정 됨.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와 해당 법조문과 위배되는 것임.
- 노동부 설명 자료에서는 시행령 4조가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렇다면 시행령 조문에 명확히 명기하여, 의무이행의 당사자인 경영책임자와 수사 및 기소와 판결 절차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개정요구(안)

- ① 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중략---다음 각 호를 말하며, 법 5조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도 이와 같다
- ② 시행령 4조의 1호부터 8호까지 각 호마다 <종사자 명기>

3) 8호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 안전 및 보건관리 비용이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으로

○ 시행령 문제점

- 중대재해가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도급 및 위탁 과정에서 최저단가 및 공기나 업무수행기간 단축이 핵심 원인임은 수차례 밝혀진 바임.
- 8호에서는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관리 비용과 수행기간에 대해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확인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 <적정한 안전 및 보건관리 비용>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비용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한 것이며 핵심 대책이 될 수 없음.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호구 지급 비용이 매우 낮게 책정되거나 없어 품질, 수량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보다 심각한 문제는 도급단가, 위탁단가에서 최저낙찰로 진행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음. 하도급 입찰과정에서 안전보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입 낙찰이 문제였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공공건설공사 일부만 있는 상황임.
- ‘수행기간 보장’도 무엇을 위한 수행기간 보장인지가 명확해야 실물 작동하게 될 것임.
- 도급, 위탁의 경우에 재해예방을 위한 적정한 인력과 예산의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목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서류상, 형식상 기준에 불과함. 이는 현행의 원 하도급간 체결되는 계약에서 전체 도급은 최저낙찰로 하면서, 계약서에는 노동시간, 산안법 준수 등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하청업체에게 있음을 규정해 왔던 현행 계약 형태와 같은 것이며, 재해예방이 아니라 책임전가로 귀결됨.
- <안전 및 보건관리 비용> 으로 한정하면 보호구 지급 등으로만 해석됨. 하도급의 인력 등 적정한 비용지급과 수행기간 등 중대재해 핵심 대책이 제외 됨
-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보장해야 하는 인력 등 적정한 비용과 수행기간으로 개정되어야 함.

-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직접이행의 의무가 부과되어야 함

○ 개정 요구안

8. - 종략 -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할 것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받는 자에게 재해예방을 위해 보장해야 하는 인력 등 적정한 비용과 수행 기간.

4) 시행령 4조 4호에 2인1조, 과로사 예방 등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 의무 명시

○ 시행령 문제점

- 중대재해 발생의 조직적, 구조적 핵심원인은 적정인력의 배치임. 이는 말단 안전관리자의 권한이 아니며, 경영책임자만이 권한을 가지는 중대재해 예방 핵심내용임.
- 법 4조 1항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임. 그러나, 시행령 4조 4호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협소하게 규정 함
- 동 법에서 규정한 중대 산업재해의 정의는 사고성 재해, 직업성 질병, 과로사 등이 포함됨. 이에 법 4조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은 사고성 재해의 주요 원인인 2인1조 작업 지침 위반, 심야 단독작업, 신호수, 밀폐작업 감시등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으로 해석됨.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은 법령에 규정된 전문 인력, 신호수 등 협소하게 해석됨. 구의역 김군 참사,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하여 무수히 발생한 위험업무의 단독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이 또 다시 불가능하게 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업무의 적정인력 배치 규정은 전무하다시피 함.
- 국내외 다수의 연구보고에서 9시간 노동은 사고사망 발생 위험을 2배 이상 높이고, 12시간 이상 노동부터는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한국은 매년 추락사망이 320여명 발생하나, 과로사망은 520여명이 발생함. 과로사망은 노동시간 및 연속휴게시간 부여와 같은 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과로사 사고성 재해가 근절되어야 함. 적정인력 확보는 경영책임자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핵심 내용임.
-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예산을 편성, 집행,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체계 마련>으로 의무 이행을 한 것으로 됨. 이에 체계 마련이 아니라, 집행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야 함.

- 중대 시민재해 관련 시행령 10조, 11조 등에서는 ‘중대 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되도록 할 것’으로 규정. 체계 마련이 아닌 집행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음.

○ 개정요구(안)

- ① 4. 매년 2인1조 근무 작업과 근무기간 6개월 미만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작업, 과로사 방지 및 안전작업을 위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할 것
- ② 4. 매년 종사자의 재해예방 및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할 것

5) 2호 위험성 평가 실시, 6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업안전보건협의체 같은 규정에 노동자, 근로자 대표의 실질적 참여와 이행 보장 명시적 규정

○ 시행령 문제점

- 2호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절차 마련과 이행상황 점검 관련, 위험성 평가 실시로 같음할 수 있음. 그러나, 위험성 평가 실시와 노동자 참여가 법제화 되어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고, 서류상의 형식적 운영이 만연하고 있음. 보완 규정 없이 위험성 평가 실시로 같음할 경우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할 것임. 이에 보완 방안이 반드시 필요함
- 반복적인 중대재해의 핵심 원인중이 하나는 현장 종사자의 개선 요구를 무시한 결과임. 6호의 안전보건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 의견청취와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업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등으로 같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동 제도의 구성 및 심의의결 안전 등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제도로 반드시 법에 명시되어야 함. 그러나, 활동시간 보장, 형식적 운영, 심의의결사항의 미 이행등 서류상 형식적 운영이 만연하고 있음. 이에 보완규정 없이 같음할 경우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할 것임. 이에 활동시간 보장, 심의의결 사항 이행등 보완방안이 반드시 필요함.
- 시행령 4조 3호 나목에서 전문 인력이 겸직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 이와 같이 위험성 평가의 실시의 노동자 참여 및 개선방안 이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업안전보건 노사협의체의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협약 혹은 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함.

○ 개정요구(안)

① 2호

- 중략 :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혹은 노사협약에 따라 종사자 및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 및 개선방안 이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6호 종사자 의견 청취

- 중략 : 의견청취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혹은 노사협약에 따라 근로자 위원들의 활동시간을 보장하는 산안법 24조, 64조, 75조에 따르는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 의결 및 개선방안 이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대상 확대

○ 시행령 5호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대상 확대

- 일정규모 이상의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에 찬성하나, 적용규모는 확대되어야 함.
- 건설업의 경우 200위 이상 기업은 1,000위 건설회사로 확대되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14조의 대표이사 이사회 보고의무가 적용되는 1,000위 건설회사로 확대되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 위탁이 금지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전담조직이 구성되도록 해야 함. 특히,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구성이 높은 사업장은 300인 이상 기업도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함.

○ 개정요구(안)

- 300인 이상 기업 및 1,000 위 건설회사 등으로 확대

3. 시행령 5조 :

중대 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1항 :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 등 적용법령 명시

○ 시행령의 문제점

- 시행령 5조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한다> 규정
- 노동부 설명 자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 안전법> <선원법> 등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해당 여부에 대한 별도 질의에서는 근로기준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에는 중대산업재해 중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방지,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과로사, 일터 괴롭힘 중대 산업재해 발생에 경영책임자는 의무 위반이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도급금지 대상도 협소하고, 청소노동자의 야간작업, 폭염, 폭설, 폭우 등에 대한 작업 중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야간작업등 각종 위험작업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무수한 중대재해의 경영책임자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되며, 시행령의 다른 조항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항임.
-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 왔고,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9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만 대상임. 이에 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호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여타의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 산재사망이 집중 발생하는 건설업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핵심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음. 이에 2018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에는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사망 시 3년이상의 형사처벌이 입법 예고안으로 발표되기도 함. 광주 붕괴참사에서도 불법 재하도급이 핵심원인으로 지목되고, 법 개정 추진이 발표되었으나, 현행의 처벌 대상은 경영책임자가 아니라 <하도급을 관리하는 자> 임. 형량이 강화되더라도 말단 관리자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건설업 산재사망의 핵심원인인 불법 재하도급의 근절을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건설산업기본법이 명시되어야 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직종이나 전속성 제한 없이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원청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정 해석한다면 대다수 특수고용노동자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됨.
-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특정하지 않고, 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하면 수사, 기소 단계에서부터 자의적으로 대상을 축소시킬 것임. 이에 안전보건관계 법령 중 핵심 법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조항으로 추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건설업 관련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철거해체 공사 관련 건축물 관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새롭게 제정되는 법령을 정기적으로 추가 확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안전보건관계 법령 개정요구 (안)

법 명칭	명시근거와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안전보건 기본법 특수고용노동자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동일하게 적용대상과 기준 확대 개정
광산안전법 선박안전법 원자력 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2조 규정으로 일부 조항 적용제외가 되어 있으므로 명시 필요함. 혹은 산안법 개정으로 별표조항 삭제
근로기준법	- 법정 노동시간. 연장근로제한. 노동시간 특례 사업장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운행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15분,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이상 휴식보장 - 출근 후 첫 운행시작이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이후 8시간 이상 되어야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 휴게시간 보장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법	- 과로방지 안전 확보 위한 휴식시간, 휴식 공간 제공 - 안전운행 위한 주행로, 차량 접안시설 등의 충분한 확보
건설산업기본법, 승강기 안전관리 법,소프트웨어 진 흥법 등	- 건설업의 재하도급 등 다단계 하도급 금지 규정 근거 - 재하도급 금지가 규정되어 있는 법 명시 필요
폐기물 관리법	- 청소 노동자의 주간작업, 3인1조 작업,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등 작업시간 조정 및 직업중지 명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기본법 -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보수기간 단축 금지 -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공사 보수 금지
금융5법	- 사무금융 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 관련 규정되어 있는 법 - 폭언, 폭행 시 사업주의 고발의무 등 명시
그 밖에 종사자의 신체 및 정신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법령	
- 정기적으로 제 개정되는 법령을 추가 확대 하도록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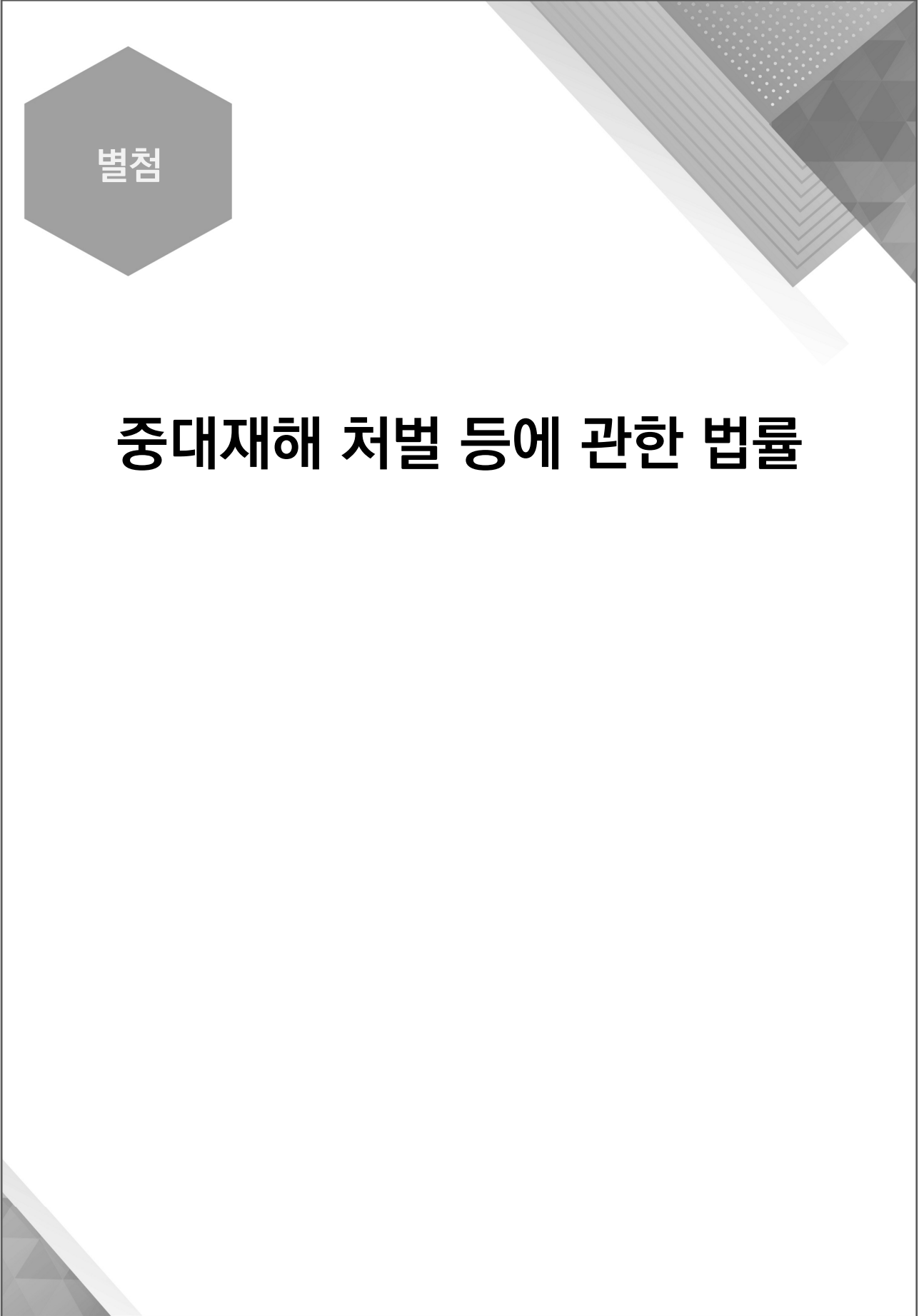
2) 2항 1호 안전보건관계 법령 점검 민간위탁 허용 삭제

○ 시행령의 문제점

-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를 점검, 점검결과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예산 추가 편성 집행 등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핵심 조항임
- 시행령 5조에 부여된 경영책임자 의무는 법령이행여부 점검이 첫 단계 조치임. 점검결과가 왜곡 조작되거나, 부실한 점검이 진행된다면 그 이후 점검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인력배치 예산 추가 편성 등 경영책임자 의무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경영책임자 의무 불 이행도 발생하지 않게 됨.
- 위탁이 허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21조, 74조에 따른 민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해서만 점검의 전문성이 있고, 여타의 안전보건관계 법령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이 불가능함. 또한, 민간위탁기관은 1개월에 1-2회 점검만 진행하는 것으로, 점검 시에는 법령을 이행하고, 평소에는 법령이행이 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음. 더욱이 현행의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민간위탁이 금지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하게 되는 것임.
- 그러나, 2항 1호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책임자 처벌이 사실상 완전 무력화 될 것임. 민간기관은 기업에 점검 비용을 받고 수행하는 갑을계약을 맺고 있음. 민간기관의 점검결과 조작 및 왜곡, 부실 점검에 대한 처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아님. 노동부의 민간기관에 대한 정도 관리 점검 등은 영업정지등에 불과하고, 민간기관은 기존의 범위반에 대해서도 수시로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며 실질적 처벌이 안 되어 왔음.
- 법령의무 이행에 대해 민간위탁이 아닌 자체점검의 경우에도 부실 점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함. 그러나, 민간위탁이 아닌 경우에는 법령점검을 채용된 사람을 통해 점검하게 되고, 이에 대한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의 관리 감독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나,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의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됨.
- 점검에 대한 민간위탁은 삭제하고, 내부 점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점검 등에 대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추가 규정하여야 함.

○ 개정요구(안)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법령 의무 이행 점검 민간위탁 조항 삭제② 경영책임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결과가 조작되거나 부실점검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별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

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중

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1. 1. 26.] 제16조

부 칙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별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2.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공동주택이 그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 그 건축물 및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 라목에 따른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물. 다만,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 나.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철도교량
 - 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 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

제공미터 이상인 것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이 운영하는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 나. 가목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5.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받기 1회 이상 청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이 경우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

음할 수 있다.

7. 사업 또는 각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할 것
8.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 가.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절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제5조(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전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호의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6조(교육내용과 교육시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주요내용
3.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②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시기 및 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자가 지정된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1회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교육일정의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비용의 부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10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2.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되도록 할 것
3. 별표 5에서 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 가.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 나.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보고 절차,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절차,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및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미흡하다고 평가될 경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1항제3호의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할 경우 그 개선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부담한다.

제11조(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배치, 추가 예산편성·집행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확인한 결과를 보고받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시할 것

제12조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있는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 가. 제3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 및 그 편성 여부

- 나. 기 편성된 안전·보건 관련 인력에게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2.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안전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집행되었는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 가. 제3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 및 그 편성 여부
- 나. 기 편성된 안전관련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3.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충실히 이행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가.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공중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장비의 확보를 포함한다)
-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공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 다.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기 계획된 안전점검 등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5.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관리대책이 수립되도록 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 종사자 또는 이용자 등이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고,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라. 비상상황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대피훈련에 대한 사항은 모든

공중교통수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안전계획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인력·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설계·설치·제조에 대한 보완·보강 요청, 이용 제한 등 그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고 공중이용시설과 그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 나. 위탁업무 수행 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비용의 지급

제13조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 시 의무의 이행 또는 개선·보완을 지시할 것.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시할 것

제4장 보칙

제14조(공표 대상 및 방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2.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3.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위반 사항
4.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임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5조(서면자료의 보관)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이행에 관한 내용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영은 2022.1.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애,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

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렘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농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별표 2]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시설(제3조제1호 관련)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0.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7.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1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객석 수 1천석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별표 3]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제3조제2호 관련)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 항만			
가.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나. 계류시설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 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 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2) 16층 이상 또는 연 면적 3만제곱미터 이 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 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 교시설, 판매시설, 운 수시설 중 여객용 시 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 시설, 숙박시설 중 관 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6. 하천 가. 하구둑 나. 제방 다. 보	1) 하구둑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나. 하수도	1) 광역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8. 옹벽 및 절토사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 (鉛直)높이(옹벽이 있 는 경우 옹벽 상단으 로부터의 높이) 30미 터 이상을 포함한 절 토부(땅깎기를 한 부 분을 말한다)로서 단 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	공동구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흥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흥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5.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6. “방파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을 말한다.
7.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8.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9.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제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수도시설로 본다.
10.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1.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3.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5. “철도 역사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6.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7.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8.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

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9. 하천의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20.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1.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22.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한다.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를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이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은 하나의 교육일정에서 최초로 참여하지 않은 날을 의미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의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기업경영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교육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건설업의 경우 전년도 전체 공사수주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500	1,000	1,500
	나. 그 밖의 경우	1,000	3,000	5,000

[별표 5] 제10조제1항제3호의 “원료 또는 제조물”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7.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8.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9.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0. 「충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1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